

|  |
| ---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안국동) T : 02) 3478-0529 F: 02) 3478-0527변호사: 김세진, 정신영, 이일, 전수연 E-mail: info @apil.or.kr 홈페이지:www.apil.or.kr |
|  |

**[대상]**

2020년 8월 9일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2022년 9월 7일자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
| --- |
| Forced labor in salt farms received a significant media spotlight in 2014, which revealed in detail the vulnerabilities of South Korea’s solar salt industry and the subsequent risk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labor and human trafficking. Since 2014, what concrete steps has Daesang taken each year to preemptively identify, prevent, and respo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mpany’s solar salt supply chain? If there is a due diligence/monitoring system used for salt farms, please provide a detailed description including the method, frequency, and result of such assessment. |

귀사는 위 질의에 대해 매년 4월 소금 공급업체에 대해 인권 항목을 평가(소금 생산 방법, 노동환경 직접생산 여부)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귀사는 몇 년도부터 매년 위와 같은 인권 항목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귀사는 위 답변서에서 염전 농가의 작업환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는 모두 평가기준표를 통해서 시행 및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수행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금 공급자가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자가 진단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귀사 직원이나 귀사에서 의뢰한 제3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요?)
2. 귀사가 인권 항목 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기준표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3. 귀사는 최근 5년 간 인권 항목 평가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공급자를 발견하였는지요? 발견하셨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귀사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공급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요?

|  |
| --- |
| Is Daesang aware of salt farms without employees that supply the company with quantities substantially larger than salt farms with employees? If so, what is the company’s understanding of such differences? [대상에 납품하는 염전 중 고용염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납품하는 비고용염전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귀사는 위 질문에 대해 도초도에서 소금을 생사하고 있는 농가의 90%이상이 직접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여한 농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귀사에 소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 중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염 생산자는 연도 별로 몇 개입니까? 또한 지난 5년 동안 위 염 생산자인 공급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연도 별로 몇 명입니까?